

효성첨단소재(주) 협력회사 행동지침

효성첨단소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협력회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'효성첨단소재(주) 협력회사 행동지침'을 정하였습니다.

본 규범을 통해 효성첨단소재와 협력회사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성첨단소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사회적 책임 이행 기준을 권고합니다.

본 규범은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,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, OECD가이드라인 등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, 본 규범과 현지 법규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.

효성첨단소재는 협력회사와 함께 윤리적 기업 운영,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존중,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, 그리고 환경경영에 대한 책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제시합니다.

윤리 및 공정거래: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적극적인 윤리경영 동참을 요청합니다.

- ① 반부패: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, 선물, 편의 등의 대가를 직·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, 부당한 요구 금지
- ② 공정거래와 경쟁: 입찰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경쟁에 관한 규제와 기준을 준수하며, 불공정 행위 시 거래 중단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
- ③ 고객만족: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
- ④ 이해관계 상충: 개인과 비즈니스 간 이해 상충 관련 또는 초래될 수 있는 계약 사전 방지
- ⑤ 지적재산권 보호: 협력회사는 효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, 하위 협력회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
- ⑥ 개인정보 보호: 협력회사, 임직원,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를 보호
- ⑦ 제보 익명성과 보복금지: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보복의 두려움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
- ⑧ 분쟁광물 금지: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모든 원자재 및 원료 사용 금지

인권 및 노동: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.

- ① 차별금지: 인종, 언어, 종교, 민족, 장애, 정치,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
- ② 공정한 보상: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제공
- ③ 집회 및 결사의 자유: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 보장
- ④ 노동환경 개선: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을 보장하며, 정기적 유급휴가 제공
- ⑤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: 사업국가 기준 최저 고용 연령 준수와 직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금지
- ⑥ 재산권 보호: 협력회사는 효성첨단소재(주)와 2차 협력회사의 모든 지적물적재산권을 존중
- ⑦ 사생활 보호: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, 주택, 통신 등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간섭 금지

안전 및 보건: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합니다.

- ① 근무환경 개선: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
- ② 비상사태 대비: 비상사태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대피훈련을 통한 효과적 대피능력 제고
- ③ 산업재해 예방: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력
- ④ 위생 관리: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, 식수, 기숙사는 위생적으로 관리
- ⑤ 안전보건 교육: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제공

환경: 제공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고,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.

- ① 환경법규 준수: 법정 필수 인허가 취득은 물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준수
- ② 환경영향 저감: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
- ③ 유해물질 관리: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
- ④ 대기오염 관리: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기오염물질과 방지시설 모니터링
- ⑤ 물 관리: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치 내 배출 모니터링

협력회사 행동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며, 개정된 사항은 효성첨단소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 또한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첨단소재의 제3자 평가기관은 협력회사 행동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 및 현장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